와물까동차 꺽깨함에 탑승 운행 중 떨어짐

재 해 개 요

'14년 3월 경남 김해시 소재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반원 형태의 철구조물을 실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타고 이동하던 중 차량이 흔들려 철구조물과 함께 피재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철구조물과 바닥사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

재해상황도



<기인물: 화물자동차>



<재해상황도>

재해발생상황

○ 피재자는 화물자동차에 철구조물 상차를 마친 후 차량 적재함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 중 철구조물 3개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짐

※기인물

※ 가해 물

- 화물자동차(25톤)

- 520mm(OD)×7,200mm(1.6톤)

- 용도 : 석유시추선 철구조물

- 화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로프를 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적재함을 연 상태로 후진으로 운행함
- 바닥에는 단차 70㎜의 요철이 있는 등 평탄하지 않은 조건이었음

재해발생 원인

- 화물자동차는 화물의 적재·하역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적재함에 탑승한 채 후진하여 이동
- 화물 적재시에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, 적재함을 열어둔 상태로 운반함
- 화물자동차가 이동하는 옥외작업장 바닥상태가 불량하여 흔들림으로 인하여 화물이 붕고됨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화물자동차는 화물의 적재·하역의 용도에만 사용하고, 적재함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함
- 화물 적재시에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적재함은 닫은 채로 운반하여야 함
- 화물자동차가 이동하는 경로는 평탄하게 관리해야 함

관련 법규

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(주용도외의 사용제한)

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·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(화물적재 시의 조치)
 -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2.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